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기 대여·양도 기준 및 국가별 실적 상임위 보고〉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88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 군수품 국외 대여·양도 절차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8. 28.
3. 회 부 일 : 2024.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한 중 하나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임.

군수품이 국유재산임에도 대여·양도 현황에 대해 결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군수품이 외국으로 나갔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현행 「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 대여·양도 권한을 국방부장관, 즉, 국방관서 및 각군에 부여한 취지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 외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나 정부가 외국에 제공하는 대여·양도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음.

외국에 대여·양도하는 무기지원 기준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무기지원 기준에 맞게 외국에 제공한 대여·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한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인 무기 대여·양도함에 있어 무기지원 기준에 맞추어 무기 대여·양도했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무기 대여·양도 기준 및 국가별 실적 상임위 보고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시에 외국에 대한 무기 대여·양도 기준과 국가별 대여·양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5조의2(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 외국에 대한 무기(제3조에 따른 전비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여·양도 기준과 전년도 국가별 무기 대여·양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 현행법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¹⁾에서는 군수품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 정부에 대여·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군수품 대여·양도 조건 및 승인권자]

구분	조건	승인
대여	○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 군수품 대여 ○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	국방부장관
양도	대여 조항 준용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대여·양도하려는 군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백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는 군수품의 종류, 대여·양도 이유 및 대여·양도를 받을 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1) 「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4.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이유
5.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6.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7.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 한편,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양도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예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로 국회에 제출되어 결산심사를 받게 됨.

□ 개정안은 군수품 중 무기를 외국에 대여·양도하게 된 경우, 매년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시(다음년도 5.31.)에 외국에의 무기 대여·양도 기준 및 전년도 국가별 무기 대여·양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첫째, 무기의 대여·양도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지도록 할 수 있음. 현재 무기의 대여·양도는 국회의 사전 동의절차 없이 국방부 등 정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 군의 무기가 사용됨으로써 발생가능한 국제적인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대여·양도 기준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이중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 둘째, 외국에의 대여·양도에 대한 사후적 통제라는 점에서 현재 국방부의 군사외교에 관한 업무의 재량을 크게 침범하지 않고 사전적 통제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에의 대여·양도 지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국가와의 국제·외교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방위원회 소관 다른 입법례를 볼 때,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특별히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에 보고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입법례 현황]

구분	내용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방위 사업법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속소요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研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u>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 넷째,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에 세입세부사업²⁾으로 군수품의 유상 대여·양도에 따른 사업수입이 총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군수품 중에서도 무기의 대여·양도에 대한 실적 및 사업수입액 등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운바, 무기의 대여·양도에 대한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은 국회의 결산 심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나타남³⁾.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무기의 ‘무상’ 대여·양도 현황은 별도로 보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⁴⁾.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도 국회는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정책질의·현안질의 및 이를 위한 자료요구, 서면질의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어 대여·양도의 기준 및 대상 국가에 대한 적절성 등을 국회에서 논의함으로써 기준 및 대상국에 대한 문제

2)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외의 기타관유물(군수품) 대여에 따른 사용료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2,661	2,661	2,661	1,829	1,810	68.0	99.0	19	-
'22	1,990	1,990	1,990	6,499	6,472	325.3	99.6	23	4
'23	2,054	2,054	2,054	36,836	36,820	1,792.6	100.0	16	-
'24	7,245	7,245	7,245	7,496	7,480	103.2	99.8	-	-

3) 다만,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무기류의 유상 대여·양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함.

4) 우크라이나 물적 자원 지원 현황

구분	기간	지원내용
제1차 지원	'22.3.	방탄헬멧, 천막 등 20종
제2차 지원	'22.4.	방탄조끼, 전투식량 등 25종
제3차 지원	'22.6.	방독면, 정화통 등 2종
제4차 지원	'23.7.~'24.5.	지뢰탐지기, 의무후송차량 등 20종

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무기의 대여·양도에 있어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및 「군수품 관리 훈령」에 유·무상 대여·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에서 대여·양도에 대한 ‘조건·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의 대여·양도 기준을 확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군수품 대여·양도 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예비역 군인의 훈련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총화기류, 탄약, 군장비, 침구, 피복 및 훈련용 기자재로 한정한다.
3. 대한재향군인회,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그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로 한정한다.
4. 군의 영내 매점 및 그 밖의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만, 그 설비에 필요한 기재 및 기구로 한정한다.
5. 국가의 시책 또는 국방사상을 선전·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인쇄물, 사진, 라디오, 확성기, 영사용 기재, 총화기류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6.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실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군수품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7. 재해복구공사 또는 이재민의 긴급구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침구, 피복, 식량, 기계, 기구 및 군장비로 한정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하거나 방역사업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다만, 군장비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9. 군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10. 국가의 시책에 따른 탄약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서 불용 결정된 군건 또는 군마를 양도하는 경우
2. 제28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

「군수품 관리 훈령」

제55조 (해외유상양도) ① 해외유상양도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 요청국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
2. 양도대상 군수품을 관리하는 군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
3. 해외유상양도가 잉여 또는 비축초과 군수품의 효과적 처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외유상양도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군수품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군수품의 대여·양도에 관한 권한을 국방관서 및 각 군에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 및 군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외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라는 취지인바, 개정안과 같이 무기·탄약의 대여·양도 기준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추가하는 것은 위 「군수품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둘째, 국가별 무기 대여·양도 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대상 국가와의 국제·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셋째, 재정이 수반되는 무기·탄약의 대여·양도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예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회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는 등 예산편성·결산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바, 「군수품관리법」에 해당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국가회계법」

제 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 14조제 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 14조제 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 14조제 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 14조제 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 85조의 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15조의 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 14조제 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 12.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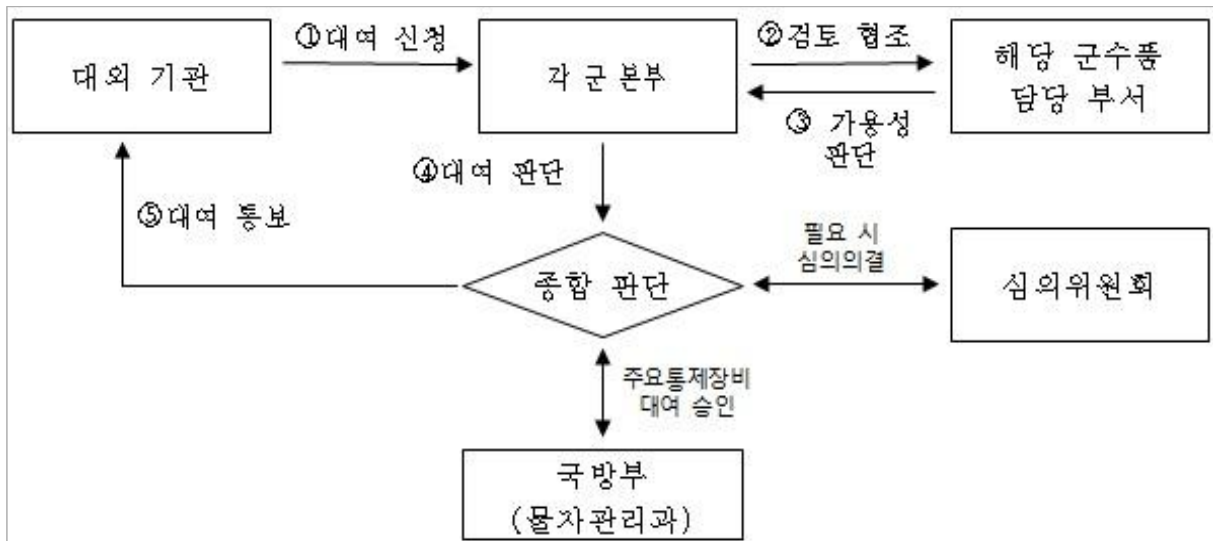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1. 군수품 국외 대여·양도 절차

[군수품 국외 대여 절차]



* 자료 : 국방부

[군수품 국외 양도 절차]



* 자료 : 국방부